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의 목적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, 서비스 제공의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.

2. 이용 대상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인정 1~4등급 판정대상자.
- ②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인정 치매 5등급 판정대상자.
- ③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.
-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유관 기관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.

3. 이용 인원에 관한 기준

- ① 이용 인원은 재가 기관의 특성상 모집 정원은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,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이용 정원으로 기준 하여 운영한다.
- ② 5등급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치매 급여 제공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자 및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 한다.

4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센터 간에 이용을 합의한 일로부터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」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되, 이용자나 이용자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.
-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동안으로 한다.
-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이나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.
- ④ 「노인복지법 제34조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」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5. 급여 범위

① 방문요양

전문 요양보호사를 이용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개인활동 지원,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② 방문목욕

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 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이동식 욕조 또는 가정 내 욕조,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.

6. 이용자 모집 방법

본 시설은 아래와 같이 온·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며, 유인알선 행위 금지, 본인부담금 감경 및 면제 등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구분	세부내용
온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등급 신청 절차 등을 게시하여 홍보한다,- 기관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거나, 유선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.
오프라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전단지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,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.-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하여 홍보.-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제공.

7. 계약에 관한 준수사항

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, 계약 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.

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, 표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체결하며,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.

- ③ 계약서는 「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」을 사용하고, 계약당사자, 목적, 계약기간, 급여 범위, 급여 이용 및 제공, 계약자 의무, 계약 해지 요건, 계약의 해지, 이용료 납부, 재계약, 건강관리, 위급 시 조치, 개인정보 보호 의무, 기록 및 공개, 배상책임, 계약 일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이용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관,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.
- ⑤ 서비스 제공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해야 한다.
- ⑥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,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8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- 권리

- 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.
- ② 기관에서 수집·이용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- 의무

- ⑥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⑦ 이용자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⑧ 이용자의 인적 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⑨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⑩ 이용자의 병원 입원, 통원 치료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원 절차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9. 계약의 해지

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-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3회 이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,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기관에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④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- ⑤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0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① 월 이용료

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

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

(2026년/ 단위: 원)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7,450	150분 이상	50,640
60분 이상	25,320	180분 이상	57,020
90분 이상	34,120	210분 이상	63,530
120분 이상	43,430	240분 이상	70,080

건강보험공단의 등급별 월 한도액

- 방문요양

(2026년/ 단위: 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- 방문목욕

(2026년/ 단위: 원)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8,99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80,23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

- 건강보험공단의 월 한도액 내에 따른 공단 부담 및 본인 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, 6%

11. 밖의 비용부담액

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에 의한 비용 외의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한다.

- ①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
- 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
- ③ 식재료 비용(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 포함).
- ④ 이용자 희망에 의해 서비스받는 이·미용비용.
- ⑤ 이용자의 병원 입원, 통원 치료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원 절차 비용.
- ⑥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로 개인이 부담한다.
- ⑦ 이용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 시도 등 장거리 차량 이용 시, 또는 개인 여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한다.